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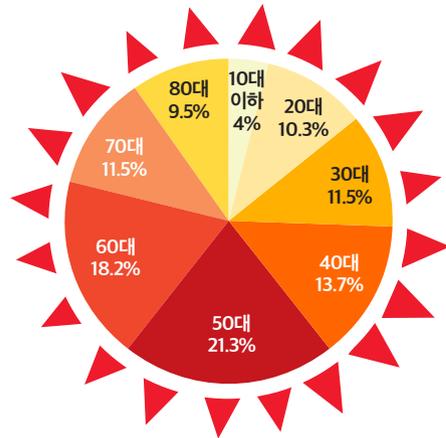
뜨거워진 지구, 타들어 가는 노동자의 건강권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온열질환

2023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보다 1.0℃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평균보다 1℃ 오르면 당뇨병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10%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실제로 2023년 온열질환 신고자는 2022년 대비 80.2% 증가했으며, 온열환자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사망자는 약 50%가 80대 이상, 추정사인은 대부분 열사병(9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나타난다.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며 방치 시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 질병은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열사병은 치사율이 높아 위험하다.



연령별 온열질환자 신고 추이

자료 : 질병관리청,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앞으로 폭염이 지속된다면 노동 생산성 감소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해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월별 전국 평균 폭염일수

(단위 : 일)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2019	0.5	3.8%	0.5	3.8%	3.0	22.9%	9.0	68.7%	0.0	0.0%	13.1
2020	-	-	1.9	24.7%	0.1	1.3%	5.7	74.0%	-	-	7.7
2021	-	-	0.1	0.8%	8.1	68.1%	3.5	29.4%	-	-	11.8
2022	0.2	1.9%	1.6	15.0%	5.8	54.2%	2.9	27.1%	0.2	1.9%	10.6
2023	0.2	1.4%	0.9	6.3%	4.1	28.9%	9	64.4%	-	-	14.2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 여름철 기온 및 폭염 현황>

위험받는 옥외노동자의 건강

올여름도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폭염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보니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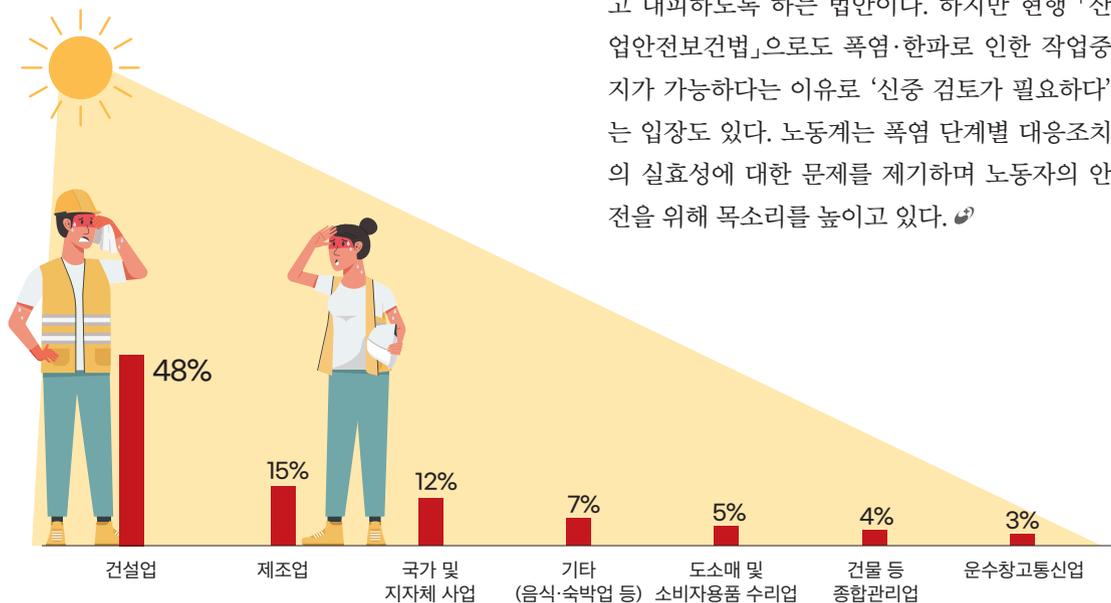
따라서 작업중지 요건을 기후에 맞춰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사업주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경우 폭염에도 휴식 제공 및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건강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열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기업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여전하다. 지난해 6월,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33℃ 날씨에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김 씨가 주차장에서 숨졌다. 그는 매시간 200대가량 카트를 끌고 밀었지만, 휴게실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덥고 습한 주차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폭염산재로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딱히 달라진 게 없다. 고용노동부는 5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8월까지 폭염 등 특별대응기간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그치는 탓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6월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기상이변으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노동계는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온열질환 산재 승인 업종별 비중 (2018~2023)

출처 : 근로복지공단